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3차 정기이사회 회의

□ 회의일시 : 2023. 7. 4.(화) 14:00

□ 회의장소 :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

□ 참석이사 : 권태선 이 사 장
강중묵 이 사
김기중 이 사
김도인 이 사
김석환 이 사
박선아 이 사
윤능호 이 사
임정환 이 사
지성우 이 사 (9명)

□ 불참이사 : 없 음

제13차 정기이사회 회의 속기록

【14시 00분 개회】

1. 성원 보고

○ 의장

- 간사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재적이사 아홉 분 전원과 감사님이 참석하셔서 제13차 정기이사회가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3차 정기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 회의록 확인

○ 의장

- 전차 회의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할 회의록은 2023년 제1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간사가 회의록(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간사

- 제1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안건 심의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2년 MBC경영평가 결과 승인 및 공표 결의건으로 2022년 MBC경영평가 결과를 원안대로 승인 및 공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본회 규정 제·개정 결의건으로 원안과 내용은 동일하나 '육아 휴직 휴직 자에게 3개월 동안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본회 <보수규정> 개정을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 <포상 운영기준> 제정을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 이사님들 이사회 회의록(안)에 대해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사회 폐회 후 데스크에 비치된 회의록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경과 및 동정 보고

○ 의장

- 간사로부터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 간사

- 먼저 사무처 업무보고입니다. 감사원 국민감사실시 관련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지난 6월 2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4차 자료요구 공문이 6월 27일에 접수됐습니다. 요구자료 목록은 2~3차 목록과 동일합니다. 어제 저희가 감사원에 회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내용의 요지는 먼저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했거나 국민감사청구 사항과 무관하다, 두 번째로 MBC 사규 개정건 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본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세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이 본회 사무 처리에 법령위반, 부패행위, 공익훼손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어제 감사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구두로 통보받은 내용인데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 7월 10일부터 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방송인 인턴십 공모 실시 결과 71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12명의 합격자를 7월 1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턴 근무기간은 7월 24일~8월 31일까지 6주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MBC저널리즘스쿨 수강생 현장교육이 MBC 보도·예능·드라마·시사 4개 분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7월 3일~7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MBC 관련 동정입니다. 5월 누적 경영실적입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53억 원 감소한 2,683억 원, 영업비용은 전년동기 대비 87억 원 증가한 2,82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40억 원 감소한 144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김기중 이사

- 누적이지요?

○ 간사

- 예. 주요 손익 현황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우선 광고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억 원 감소한 ***억 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타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SBS의 광고매출은 ***억 원, KBS는 전국 기준으로 ***억 원 광고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와 유사합니다. 협찬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억 원 감소한 ***억 원, 그리고 콘텐츠유통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억 원 증가한 ***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사 및 기타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억 원 감소

한 ***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제작비는 ***억 원을 집행했는데 전년 대비 ***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드라마 제작비가 전년대비 ***억 원 증가한 ***억 원, 그다음에 제작경비가 전년동기 대비 ***억 원 감소한 ***억 원, 콘텐츠유통 및 행사경비가 전년동기 대비 ***억 원 증가한 ***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5주차 핵심시간대 가구시청률은 3.3%입니다. 그리고 2049 시청률 상위 20개 프로그램에 MBC가 4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혼자 산다>가 1위,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가 6위, <놀면 뭐하니?>가 16위, <전지적 참견시점>이 1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메인뉴스 시청률은 주중 4.3%, 주말 4.0%입니다. 그리고 MBC 본사에서 연차축진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격주 4.5일 근무제를 7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송계 동정입니다. 감사원에서 방통위 정기감사 결과를 지난 6월 28일에 공시했습니다. 공시 내용은 재승인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해서는 '직원 파면·해임 등 징계·주의', 용역 발주·대금 지급 부당 처리와 관련해서는 '징계·통보', KBS 재허가 심사 업무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주의', 직원교육 '주의', 직원 근태 '통보' 등의 감사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前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소송이 최종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방통위에서 감사원 인력 등의 파견을 받아 현재 방통심의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가 지난 6월 29일에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임원 향후 일정입니다. 7월 17일~18일 오후 2시에 MBC 하반기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은 제9차 임시이사회, 7월 18일은 제14차 정기이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이사회는 휴식이고, 9월 5일 화요일 제15차 정기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 이사님들 경과 및 동정 보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업무 보고

1) MBC 업무 보고

① MBC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

○ 의장

- 저희가 MBC 현장 업무 보고라고 했는데, 아까 처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MBC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노사 단체협약 체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안전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서 제목을 고치지 않은 상태로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는 '현장'이라는 말을 빼고, MBC 업무 보고를 들은 것으로 기록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이사 있음) MBC 업무 보고 2건을 듣고 현장에 방문해서 MBC가 시설을 어떻게 바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식 본부장 오시라고 하시지요.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최진훈 MBC 법무팀장 입장)

“MBC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입니다. 회의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공개해도 됩니다.

○ 의장

- 그러면 공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6월에 3건의 이사회 결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장학금 기부가 정수장학회로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부금은 20억 원 정도이고, 대체로 최근 3년 정수장학회 장학금 집행실적과 비슷합니다. 지급방법은 2회 분할 지급이었고, 전국의 우수 인재들에게는 일괄적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공존공영을 위한 해외 장학금 지급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3>번에 집행 실적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은 3건을 다 보고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사규개정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구매절차내규, 뉴스룸 팀명 변경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규정 신설이고, 구매절차내규는 구매심사위원회 주체 및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 뉴스룸 팀명 변경입니다. ‘복지교육팀’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재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복지교육팀’으로 이름이 나가다 보니까 문화부 전문기자들, 문화 담당기자들이 “MBC에는 문화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느냐, 다루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교육팀’을 ‘정책문화팀’으로 해서 ‘문화’라는 것을 명기했습니다. 다음 사규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직제규정과 직제내규입니다. 보도본부에 통일방송연구소와 산하 파트가 있었는데 조직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및 각종 조사, 연구, 자료관리 업무 강화 목표와 “통일전망대” 제작을 뉴스룸 안으로 옮겨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탐사기획센터로 이동했습니다. ESG·시청자팀은 문구들이 맞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개정을 했고, 제작기술팀이 저희가 그동안 MBC 시설을 외부에 영화촬영이나 또는 다양한 이유로 대관할 때 주무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반려하기도 하고 담당자가 없어서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 제작기술팀에 명시했습니다. ‘사내 시설 외부 대관 담당 부서 및 응대 창구 단일화’, 이것을 왜 기술로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대관을 하는데 만약 영화촬영을 하더라도 엔지니어들이 항상 무엇을 작동시켜 줘야 가능합니다. 엔지니어가 없으면서 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작기술팀이 이것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전 시설을 전부 대관 가능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대관하겠다고 제안해 왔고, 쿠팡에서도 일부 시설을 빌려서 쓰겠다고 제안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통일방송연구소가 국 단위였는데 저희가 봤을 때 국 단위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팀 단위면 충분히 하지 않느냐고 해서 ‘통일방송연구소’를 폐지하고 탐사기획센터 내 ‘한반도평화연구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방송연구소에

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NK뉴스파트인데 파트 업무는 '한반도평화연구팀'으로 이관하고 폐지시켰습니다. ESG·시청자팀은 명칭들이 불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꿈나무축구재단'을 'MBC 꿈나무축구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ESG경영 항목이 여러 가지 산재해 있었는데 통합시켰습니다. 제작기술팀은 말씀드린 대로 '공용시설 대관 업무'에 대한 주무 부서를 명확하게 명기했습니다. 뒤에는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조직표의 빨간색이 새로운 조직개편 대상입니다. 보도본부 안에 '정책문화팀'이 있고, 탐사기획센터 내 '한반도평화연구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환 이사

- 이 건은 아닌데 '팩트체크위원회'라고 팀을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팩트체크 저널리즘책무실인데 거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 단위로 해서 아직 완비는 안 됐지만 부사장 직속으로 국 단위 국장급으로 해서 거의 완료돼서 다음 주나 다다음주 정도에 조직개편할 예정입니다.

○ 강중목 이사

- 통일방송연구소는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또 MBC만 갖고 있는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것은 조직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이런 차원이 다입니까?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 강중목 이사

-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저널리즘책무실도 국 단위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계속 조직을 비대화할 수는 없고, 또 공개 자리에서 애매합니다만 MBC가 자랑하는 전문기자가 계신데 안식년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차라리 뉴스룸으로 일원화시켜서 집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 의장

- 남북 관련 뉴스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보도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그렇습니다. SBS를 보면 보도 안에서 해서 좀 더 임팩트가 있다는 평가도 있어서, 저희가 뉴스룸 밖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고민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도인 이사

- 그동안 통일방송연구소 조직이 특징인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 이 사람이 정년퇴직 하면 끊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 보도국 내로 가져가서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여러 인재들을 기른다는 측면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도인 이사

- 지난번 제12차 정기이사회 때 울산MBC에서 관광단지 개발하는 것이 보고사항이었습니까, 사전협의사항이었습니까? 그것이 헛갈립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저희는 보고사항으로 이해했습니다.

○ 김도인 이사

- 그날 방문진의 분위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울산MBC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이 한 6,80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큼니다. 그다음에 기간도 6년에 걸쳐 하는 것이고, 사업승인받는 시점을 한 2026년으로 예상한다고 해서 이것은 관계사 중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협의사항인데 이것을 왜 보고사항으로 했을까?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보고사항은 관계사 중요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예, 투자입니다. 보통 사옥....

○ 김도인 이사

- 그것은 사전협의사항이었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방문진 이사회 있고 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울산MBC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전에 울산MBC 이사회도 다 했다고 합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보고사항으로 저희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 김도인 이사

- 그때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울산MBC가 20억 원 투자하고 20억 원 대여 하면서 그 사업체의 전체 자본금이 투자 100억 원, 대여금 100억 원인데 그 정도 규모의 추진체가 전체 사업비 7,000억 원 가까운 행사 사업권을 얻어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우려했던 것은 이렇게 되면 울산MBC는 울산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역MBC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아니냐, 다른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하는데 이것은 언론사로서 본령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가 그다음 날인가 보니까 울산MBC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하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방문진 이사회를 고무도장으로 생각한 것인지, 그래서 다시 따져 보니까 정석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전협의사항이야지 보고사항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의장

-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처리됐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 사무처 정책기획팀장

-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MBC에서 안건 협의가 들어왔을 때 2019년 전례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사전협의사항이나, 보고사항이나, 또는 방문진 보고도 하지 않고 MBC와 지역MBC가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나 이렇게 검토한 결과, 일단 중장기 투자 및 계획, 저희가 중장기 투자 및 계획의 경우에는 사옥 같은 큰 인프라 투자만 그동안 방문진이 개입해 왔습니다. 이런 작은 규모, 큰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사업 규모가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울산MBC가 투입하는 금액은 이번에 40억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어서 중장기 투자 및 개발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춰서 중요한 자산으로 봐야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방문진과 MBC는 이야기가 돼서 이것은 굳이 하자면 보고사항의 일반조항들을 활용해서 이번에 보고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보고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 김도인 이사

- 2019년에 뭐가 있었지요?

○ 김재성 부장

- 2019년에 울산MBC가 똑같은 형태의 50억 원 지분 투자 및 자금 대여라는 사업을 그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문진에 협의해 왔습니다만 그때는 방문진 이사회에 상정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 김도인 이사

- 그것은 이상하게 방문진을 운영해 왔다는 소리지요. 그때 울산MBC에 50억 원 투자한 골프장도 <시사저널>에서 환경 파괴하고 그다음에 특혜 있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딱 보면 울산MBC가 총대 메고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인허가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 의장

- 그 당시에 울산MBC 사장이 이야기할 때 인허가를 받는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요?

○ 간사

- 예.

○ 김도인 이사

- 이것은 울산MBC의 공신력을 빌려줘서 하는 것입니다.

○ 의장

-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그때 당시 전동건 사장께서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가 이해하기로 김도인 이사님 말씀대로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취지까지는 아니고 공영성이나 다양한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 김도인 이사

-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발언하신 분들은 우려하는 내용이었지요.

○ 간사

-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무처에서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 또 제가 보는 입장,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보는 입장을 쪽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봤던 이 건의 내용은, 물론 지금 김도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00억 원이 넘어가는 큰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전협의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주요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자본의 20%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해석을 자기자본의 취득으로 본 것이지요. 그래서 보고사항으로….

○ 의장

- 주요자산의 취득이라고 본 것은 아니고,

○ 김도인 이사

- 주요자산의 취득이 어떻게,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 의장

- 그때 이야기한 것은 그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사안을 사전 보고사항으로 우리가 보고받은 것이 아니지요?

○ 사무처 정책기획팀장

- 예.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의 뜻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 보자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사안입니다. 방문진은 그동안 이것을 중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도 아닌 것으로 봤던 것이고,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도 아닌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분투자를 통해서 주식이 취득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표현, 20억 원짜리를 중요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 대여까지 포함해서 크게 봐도 40억 원짜리를 중요자산이 아닌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해당되는 조항을 사전 협의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자산의 취득도 아니고 바로 관리지침 보고사항의 일반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라도 보고하자. 왜냐하면 2019년과 상황이 또 바뀌었으니까, 시대정신이 또 바뀌었으니까 방문진 이사회에서 최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이런 정도, 자회사에서 투자한 개념들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해서 추가했던 것이지, 이것이 중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에 해당된다, 또는 중요자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보고사항으로 올렸던 것은 아닙니다.

○ 의장

- 그동안 방문진에서 중요자산의 취득이라든지 중장기 투자 이런 것들로 했을 경우 이 사안은 그렇게 보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방문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영역에 관련된 부분은 전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에 비춰보면 그 2가지 사안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쪽에서 방문진이 하고 있는 관리감독의 범위에 대해서 묻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보고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본부장이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고, 관계회사 쪽에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서 제목 자체가 무엇이었지요? 관계회사의 중요자산의 취득에 대한 보고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의 경영 현안 보고'라는 형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자산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MBC 본사의 경우에는 지금 중요자산을 총자산의 2.5%로 했는데 개별 자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BC 쪽에 관계회사부를 통해 그런 부분들을 각 사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린 상태지요?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 김도인 이사

- 제 말이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와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울산MBC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 40억 원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 20억 원, 대여 20억 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행사의 실체는 자본금 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5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관계회사 중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고를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 사무처 정책기획팀장

- 당시에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당시 이사장님과 처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방문진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 김도인 이사

- 그것을 방문진이 개입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그렇게 사무처에서 해석할 일이 아니지요.

○ 사무처 정책기획팀장

- 자의적이 아니고 이사장님과 MBC가 협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의장

-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례에 비춰서 한 것이겠지요.

○ 김도인 이사

- 전례가 아니고, 지금 전례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의장

- 그 전례에 비춰서 하고, 그 전례에 비춰서 한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침도 바꾸는 식으로 해서 바뀌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사회가 들어와서 MBC 관리지침의 일부 조항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 바꾸는 것들이 이런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바뀌어나가는 것이고, 바뀌 나가기 전에는 전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김도인 이사

- 지금 관리지침에 의거하더라도 이것은 사전협의사항이었지 보고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사 중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에 관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사내유보금이 300 몇 십억 원 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40억 원을 투자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투자라고….

○ 의장

- 40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20억 원을 지분 투자하고 20억 원을 대여하는 것이지요.

○ 김도인 이사

- 실체도 확실치 않은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한 것 자체가….

○ 윤능호 이사

-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전에 통일방송연구소의 업무 중 하나는 민간 교류, 단지 뉴스나 프로그램 제작 말고 그런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뉴스룸으로 들어오면 그 업무는 당분간 접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인원은 그 인원이….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 쪽에서 와서 통일방송 대북 관련, 예를 들면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든지 또 축구대회를 연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각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JTBC의 경우 평양지국을 연합뉴스와 선제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은 그런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긴축기조에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본부 안에서 다른 요구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회특파원들 숫자를 줄여달라든지, 뉴스룸의 다운사이징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순회특파원의 경우에는 이미 갔기 때문에 다시,

○ 윤능호 이사

-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 차원이기는 한데….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슬림화의 한 방안이 통일방송연구소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주신 그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능호 이사

- 그런 인원도 없이 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주로 NK뉴스, 영문뉴스 쪽에 더 집중했습니다.

○ 윤능호 이사

- 나중에 또 상황 봐서….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예, 시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중목 이사

- 연구소를 폐지하더라도 지금까지 MBC가 가져온 통일뉴스에 대한 강점들은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예. 조직의 단위만 국에서 팀으로 내려간 것이고, 구성원 숫자가 2~3명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 강중목 이사

- 한 사람에 의존해 왔던 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겠지만, 지금까지 교류해 왔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이나 MBC 뉴스의 그런 가치들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김기중 이사

- 지난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리지침상 보고사항과 사전협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차츰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는 지난번 보고사항이 저는 보고사항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방문진에 보고하면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바로 되고, 보고사항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사 부분은 방문진의 관리 범위인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방문진법에 '문화방송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이 관계사를 두고 있고, 관계사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문화방송의 MBC 경영에 관련한 사항이 전혀 아닌 것도 아니어서 불분명한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화방송과 의논해서 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고, 분명한 관리 대상은 아니니까 사전협의사항에 관계사의 중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넣었고, 보고사항에 관계사의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 부분을 넣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불분명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화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는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범위를 좁혀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데, 오히려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바로 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김도인 이사님이 지난번 울산MBC 보고사항이 중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리고 다른 이사님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불분명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할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의해서 계속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 안전, 외부에서 우리가 알고 온 어떤 안전을 가지고 왜 보고사항인데 보고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바로 하면 서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막 던져서 그것을 가지고 또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만 피곤해집니다.

○ 지성우 이사

- 지난번에 기준 가지고 말씀하실 때 저도 굉장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아마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이 규정을 만들 때 그 기준에 넣지 못한 것이 늘 그렇듯이 입법 내지는 규정을 정비하는 절차나 상황들을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업 형태가 나옵니다. 저는 김도인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예를 들면 2가지입니다. 20억 원, 20억 원 해서 40억 원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포션을 지방MBC에서는 갖고 있다, 그것도 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견제하고 또 조사하고 들여다봐야겠다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자꾸 드느냐면 다른 사업은 투자만 해놓고 그 모든 투자의 대부분 일들이 잘되느냐 잘못되느냐는 투자받은 쪽에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만약 건물에 투자한 것이어서

건물의 1/10 400억 원짜리 들어가면서 40억 원을 투자했다, 이것이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예상하고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행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도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걱정되는 것이 이것은 시행입니다. 그냥 완성되는 건물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시행에 투자했기 때문에 시행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인허가 권을 따고 그것을 유지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이 다 된 후, 아니면 그 중간에 아웃하는 형태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행사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제3의 안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액수를 가지고 이쪽 이나 이쪽이나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울산MBC 쪽에서도 방문진에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만 해놓고 그것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시행사가 실제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테니 이것을 방문진에 보고해서 어떤 정당성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요약하면 시행 형태로 하는 것은 지금 규정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 보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김기중 이사님 말씀처럼 이것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 오늘 이 안건이 논의 안건은 아니지요?

○ 박선아 이사

- 예.

○ 의장

- 논의하는 안건도 아니고, 지난번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것을 다시 재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시지요.

○ 김도인 이사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중 이사님이 감사원 감사 말씀하시면서 보고를 안 받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방문진 감사를 나오는 것이 방문진에서 MBC와 지역사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감사가 나온 것인데,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서 보고를 안 받는다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 의장

- 그 이야기 그만하자고 했더니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 김기중 이사

- 보고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책임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만 받아서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지난번 보고가 저는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보고한 사안이라는 비밀 언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 김도인 이사

-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김기중 이사

-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 잠깐만요. 요즘 방문진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새삼 살펴봤는데 방송문화진흥회법이 2000년도에 바뀔 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런 말이 들어오면서 제5조 방문진의 업무 중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5조에 규정된 것은 제10조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열거된 것의 외의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리지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 김기중 이사

- 약간의 월권적 성향이 있지요.

○ 의장

- 월권의 경향조차도 있는 것입니다.

○ 김도인 이사

-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대구MBC에 관해서 들어온 것은….

○ 의장

-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구MBC에 관해서 들어오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나치게 한 것이지요. 이 정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② MBC 노사 단체협약 체결 보고

○ 의장

- “MBC 노사 단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다음 보고사항은 단체협약 체결의 건입니다. 지난번에 김도인 이사님께서 1월에 이미 체결

됐는데 왜 보고가 안 됐느냐고 하셔서 알아보더니 1월에 체결된 것이 맞고, 다만 MBC는 공통
 협약과 보충협약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통협약은 서울본사와 전국 16개 지역MBC가 같
 이 하는 공통사항이고, 노조가 단일노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충협약은 다
 같이 규정했을 때 각 사마다 상이함이 있기 때문에 각 사별로 다르게 협약하는 것을 보충
 협약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통협약이 끝나면 바로 보충협약에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1월에 체결하고 그다음에 MBC 사장 선임이 있었고 노조도 노조 집행부가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집행부가 교체되고, 경영진도 교체 와중에 서로가 보충협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잊어버렸던 것 같고, 이후에 진행되느라고 보충협약이 지난주 목요일에 체결됐습
 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체결됐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에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섭 경
 과를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의 큰 틀은 유지가 됐고 지역사 의견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조합
 의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상응한 정도로 여러 가지 회사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나 문구개정이 있었고, 가장 큰
 특징은 모성보호와 보육환경, 출산을 지원하는 형태의 말이 들어갔고, 다음에 성평등에 대한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모성보호 관련해서는 최근에 인구절벽도 나와서 대폭적으로 노조와 합
 의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이었는데 100일로 바꿨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도 10
 일에서 15일로 바꿨습니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분할 횟수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3회 분
 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보직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 실시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 피
 해자 지원 강화 조항이 들어가서 임시숙소 제공 등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
 방송 관련해서 사규, 강령, 가이드라인 內 일부규정을 공통협약에 명시했습니다. 강령들이나
 사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임명동의(중간평가) 대상 국장의 정책간
 담회를 년 1회 이상으로 정례화했습니다. 원래 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징계
 위원회라든지 면접위원 구성 시 양성(兩性)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
 다. 그다음에 대기나 해고의 경우 추상적 조항이 있었는데 「조직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자」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서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
 니다. 보충협약입니다. 보충협약은 공통협약 체결 이후 계속 진행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지난주 목요일에 체결됐습니다. 국장임명동의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디지털뉴
 스와 뉴스영상국은 담당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디지털뉴스가 <뉴스
 데스크>가 끝나면 그것을 클립화해서 올리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오리지널 디지털뉴스들
 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저널리즘 기능에 들어왔다고 보고 넣었고, 뉴스영상국
 도 곧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영상 앵글에 따라서 그동안 꽤 많은 시비들이 있었습니
 다. 예를 들면 어느 정당에서는 굉장히 군중이 밀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
 은 앵글을 잘 잡아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 역시 저널리즘에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두 국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건에 대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난임치
 료지원금을 1회 50만 원 3회 한도 지원했고, 대체휴일, 원격지근무금지 대상 확대가 있었습
 니다. 3세 이하 자녀 육아에서 만8세 미만 자녀 육아로 원격지근무금지 조항을 강화했습니
 다. 그다음에 상향평가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사규에는 평가등급 미달 시 보직에서 해임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노동조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평가등급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면보직시킨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

습니다. '평가등급에 미달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다'로 바꿨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면보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조합에 왜 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 김도인 이사

- 박 본부장님, MBC에게 흔히 노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도인 이사

- 그렇지요. 단체협약을 보면 MBC가 노영회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을 1월 5일에 체결한 것 같은데 지난번 이사회 때 제가 “그것 왜 보고 안 하십니까?” 했더니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판영 경영본부장 시절에 예전 정상화위원회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령과 조금 충돌되는 부분들을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대한 보고를 한다면 단체협약 조문을 가져와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보여주셔야 하는데 보면 이렇게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24조를 보니까 제24조 제1항이 “사용자와 조합은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송법 제4조 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지난번 2019헌바, 그러니까 방송편성 개입 관련해서 헌법소원 판례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언론노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섭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의 세력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사회세력이란 정당(여당·야당)과 같은 정치권력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조합(언론노조 및 기타 노조), 그리고 대기업이나 광고주 등을 포함하여”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단체협약 제24조에 ‘사용자와 조합은’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은 ‘누구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2019헌바439’ 이것이 전원재판부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조합도 방송 편성에 개입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누구든지에 포함된다고 헌법소원에서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은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24조 제3항을 보니까 “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MBC의 편성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저희가 대외적으로 보낼 때는 본부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김도인 이사

- 방송법 제4조 제3항에 보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의 경우에는 국장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MBC의 편성 책임자는 자기의 권한과 의무를 침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27조 제4항에 보니까 “공방위 위원은 공방위의 효과적 진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MBC정상화위원회에서 허 모 前 제3노조위원장을 정상화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해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대법원 판례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는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인격권, 여기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는 사측의 조사 협력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와 MBC 단체협약 제27조 제4항은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 의장

- 몇 가지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 김도인 이사

- 워낙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여기에 변호사 분도 계시고 로스쿨 교수도 계시니까 한번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4조(상향평가) 제4항에 보면 “조합의 대표자는 상향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상향평가도 일종의 다면평가일 텐데 다면평가의 원칙이 뭐냐 하면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피드백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사 전공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그러니까 언론노조MBC본부장이 상향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면 상향평가하는 사람은 언론노조 지침에 반하는 상향평가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밀투표와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MBC처럼 파업이 많았던 회사에서 지난번 2017년도 파업 때 보면 거의 MD, 주조 엔지니어까지 다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곳일수록 최소 업무는 무엇이냐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9조 시청자위원회 관련 규정은 방송법에서 최대한 다양한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방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체협약에서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노사합의로 구성하고 그 뒤에 보충협약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선정위원회 멤버가 회사 측 4명, 근로자 대표는 3명입니다. 근로자 대표는 다 언론노조이고, 그다음에 7명 중 3/5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3/5 몇 명이나 하면 4.2명입니다. 사사오입(四捨五入) 하지 않을 것이니까 언론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시청자위원은 선정될 수 없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청자위원이 한쪽 진영에서 다 되면 MBC 방송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단체협약은 인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명동의제 놓고, 그다음에 보임 후 6개월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하고 그리고 재적 과반수가 기명으로 제출하면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중간평가에 미달하면 아웃해야겠지요. 그다음에 상향평가까지 하고, 보임 또는 중간평가 6개월 후에 정책간담회, 이것이 언론노조와 지향점이 다른 사람은 보직간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어떻게 MBC가 노영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럽에서는 노동이사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조가 갖고 있는 것은 견제의 권한에 거의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단체협약 조문 제24조 '누구든지'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것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례도 있지만 직후에 KBS 김환영 사장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김환영 사장은 '누구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서 언론노조가 아닌 MBC노조를 외부로 볼 것인지 우리 내부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언론노동조합이 아니라 MBC노동조합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으로는 '누구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와 사가 같이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편성국장은 실무책임자로 되어 있고, 본부장은 총괄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총괄책임제일 때는 본부장이 하는 것이 맞고, 실무적으로 구체적 편성안을 짤 때는 편성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큰 갈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27조 제4항 공방위, 이 부분은 특히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방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응한다는 조항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의무조항과는 조금 다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김도인 이사

- 그다음에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일단 제가 답변을 다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상황평가 부분에서 익명성과 비밀유지가 안 되느냐인데 지금 익명화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다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청자위원회 부분에서 조금 살펴봐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취지에서 조합원 견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노사 단협이 구성원의 권익,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사통로를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조합이 제동을 걸어서 안 됐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감시가 투철할수록 선정할 때는 더 신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진훈 MBC 법무팀장

-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방위 운영규정 관련한 규정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위원회가 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반영해서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

○ 김도인 이사

- 그것을 추가했습니까? 어떻게요?

○ 최진훈 MBC 법무팀장

- 예, 거부할 수 없을 때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 김석환 이사

- ‘노영’이라고 할 때는 노조가 주도적이 돼서 경영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공영’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영’과 ‘견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체협약의 안들은 제가 볼 때 노조가 전횡하거나 노조가 독단적으로 MBC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 견제를 위한 장치이고 수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언론사들이 힘겹게 얻어낸 장치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뒤로 돌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가장 뛰어난 사람을 반드시 뽑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나쁜 사람이,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 권력을 전횡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있어서 노조라는 부분은 편성이든 보도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바이든(Joe Biden)도 그렇고, 앞에 오바마(Barack Obama)도 그렇고 ‘노동조합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것은 월스트리트(Wall Street)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고 올해 초에 바이든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를 바라볼 때 노조가 반드시 잘한다거나 노조가 하는 일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든 어떤 체제에서 MBC 보도와 편성과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지든 간에 노조가 지켜 왔던 가치들, ‘87년 이후에 우리가 모두 동의했던 가치들이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실효적 견제장치는 노조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성우 이사

- MBC가 공영방송이니까 공영방송들이 갖고 있는 단체협약의 틀이 있습니다. 영국에 BBC가 있을 것이고, ZDF나 또는 NHK가 갖고 있는 단체협약들이 있고, ARD 같은 경우 같은 시·주끼리 갖고 있는 협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영국 것, 독일의 ZDF 것, 일본의 NHK 3가지 종류입니다. 법무팀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KBS를 포함해서 3개와 KBS와 MBC의 단체협약을 수평으로 한번 <표>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과연 KBS에 비해서 MBC가 또는 NHK나 ZDF나 BBC에 비해서 지금 MBC가 갖고 있는 단체협약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협약이 정해지기 전 버전부터 갖고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서도 결코 우리 노동자 분들께 약하지는 않다, 그 전의 버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조항들이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비표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올리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성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KBS 수신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과 우리는 '93년에 수신료 폐지운동이 일어나서 분리징수가 일어났던 기억도 있고, 저희가 또 역사성도 있어서 2가지를 동시에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강중목 이사

- 아까 김석환 이사님 말씀에 보충인데 왜 처음부터 공정방송협의회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으며, 실무국장 중심으로 제도가 왜 처음부터 정립됐느냐 하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외압이 심할 때입니다. 그러면 외압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회사나 특히 조합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제일 강조됐던 것이 공정방송협의회, 이것은 뭐냐 하면 조합이 주체가 돼서 그것을 간섭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바깥으로부터 오는 외압을 조합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방어해 주고 그것에 대해 경영진도 같이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측면이 제일 강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본부장이 안 되고 실무국장이 책임자가 되느냐? 그때 당시 임원들이 굉장히 외압의 통로 비슷한 역할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실무자들이 쓴 기사나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최종 책임은 사장이 지겠지만 그래도 실무적 책임은 실무 국장이 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장 중심제로 가면서 회사나 노조는 국장의 어떤 역할을 인정해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2가지가 공정방송, 제도적 장치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계속 그 뒤에도 유지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조합도 외압이 아니냐, 이렇게 볼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외압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견제장치를 가진 조합이지, 그것이 핵심적인 외압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방문진은 단협에 대해 사회상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이 부분을 여기에서 맞다, 그르다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도인 이사

-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논의들이 뭐냐 하면 노조는 옳다, 그다음에 노조가 공영방송의 당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민주적 여론형성을 잘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MBC가 민주적 여론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협약을 보면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김석환 이사께서 “최소한의 견제장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 김석환 이사

- ‘실효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김도인 이사

- 실효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욕심이 지나쳐서, 단체협약이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될 때는 시정명령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경영권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노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도로 가기 위한, 지금 현재 경영진도 다 과거 언론노조에서 간부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책임제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 하면 방문진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해서 방문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는 보도국장이 하고, 시사는 시사국장이 한다고 하고, 라디오는 라디오국장이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방문진에 나오지 않습니다. KBS는 본부장이 책임지고 실·국장이 배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런 것들이 피드백됩니다. 지금 방문진은 중요한 것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경영진을 격려하고 외압이 있으면 막아주는 장치로 언론노조나 현재 경영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과유불급이라는 것입니다.

○ **김석환 이사**

- KBS 이사와 MBC 이사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KBS는 사내이사이고 저희는 사외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KBS는 이사회를 할 때 국장이 나오는 것이 맞지요. MBC는….

○ **의장**

- 국장이 항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 **김도인 이사**

- 그전에 제가 국장 때 배석했었습니다.

○ **의장**

- 제가 KBS 이사로 있을 때 본부장들이 나왔고 국장은 잠깐 나왔다가 거의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국장이 항상 배석한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물론….

○ **김도인 이사**

- 국장 배석이 핵심이 아니고, 제 말은 거기는 본부장책임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보도본부장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그것은 보도국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MBC 거버넌스 체제에 가장 큰 모순이 실무국장이 책임진다는 조항이고, 방문진법이나 방문진 거버넌스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무력화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의장**

- 지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표노조와 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근로자대표입니다.

○ **의장**

- 근로자대표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론노조 산하의 노조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로

로자대표로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다수를 누가 점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장

- 누가 대표노조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그렇습니다.

○ 김도인 이사

- 그런데 KBS는 공정방송위원회에 소수노조도 1명 참여합니다.

○ 의장

- 거기는 소수노조와 다수노조와 수의 차이가 굉장히...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도인 이사

-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이것이 많다 적다는, 어떻게 보면 방송의 다양성 그다음에 다른 생각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공정방송위원회도 언론노조와 생각이 다른 노조도 참여해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어야지, MBC 내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대외적으로 보도나 시사프로그램에서 MBC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 확증편향을 증폭시키는 역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 의장

- 이사님, 무슨 “확증편향을 증폭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 김도인 이사

- 다음에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이사님이 주신 말씀 다음 단체협약 때 반영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도인 이사

- 3년 뒤에 한다면서요?

○ 의장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오늘은 단체협약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설명 듣는 것인데 개정되지 않은 항목을 가지고 한참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MBC 노사 단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③ 상암MBC 사옥 현장 방문

○ 의장

- 오늘 현장방문을 하도록 했는데 그 건이 왜 기획됐는지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 <뉴스데스크> 스튜디오가 2013년에 상암으로 이전한 후 거의 10년 가까운 시기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다가 처음 바뀌었는데 최근에 신기술을 다 도입했습니다. XR이나 다양한 기술들이 총집합돼서 앞으로 총선방송이나 방송에 상당한 신기술을 활용할 예정이고, 또 지금 방송된 것만 해도 가상현실을 반영해서 뉴스리포트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격려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이 어떻게 도입됐는지, 뉴스와 어떻게 접목되는지 이사님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MBC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1층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지난번에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사이에 대형화면을 보셨을 텐데 거기 말고 폴바셋 쪽입니다만 그쪽에 그라운드라고 명칭하는데 1층에 과거에는 여러 가지 견학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를 휴게공간으로 바꿨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어서 이사님들께서 방문해서 살펴봐 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 의장

- 방문진 이사를 하면서 MBC를 관리감독한다, 그런데 MBC 사옥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봤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했다는 것이 우리가 방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이사님들 오늘 회의가 길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장방문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같이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폐회하고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 폐회 선언

○ 의장

- 다음 이사회는 7월 17일 월요일 제9차 임시이사회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 13차 정기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폐회】